

업라이즈투자자문 「든든 서비스 이용약관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약관 변경 사항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1.~6. (생략) 7.(신설) ②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1.~6. (현행과 같음) 7. '푸시 메시지 서비스(이하 'PUSH')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알림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활용하여 회사가 회원의 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푸시 메시지 서비스 용어 정의 추가</p>
<p>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 ①~② (생략)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,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서비스 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.</p>	<p>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,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개정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공지합니다. 다만,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이를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.</p>	<p>사전 공지 기간 변경</p>
<p>제9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시) ① (생략)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,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연락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제9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,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연락처로 제공하거나, PUSH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.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</p>	<p>정보의 제공 방법 추가</p>
<p>제14조 (회원에 대한 통지) ① (생략) ② 회사는 전체 또는 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(삭제) 홈페이지 또는 든든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 ③ (생략)</p>	<p>제14조 (회원에 대한 통지) ① (생략) ② 회사는 전체 또는 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(삭제) 홈페이지 또는 든든 애플리케이션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. ③ (생략)</p>	<p>오탈자 수정</p>